
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매뉴얼



2020. 03. 27.

의 료 지 원 센 터

1. 일반적 준수 사항

1) 교원

- 교내 근무 시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철저
- 회의 및 업무 교류 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
- 강의 시작 전 **필히 수강학생들의 건강상태 확인**(발열, 인후통, 기침, 호흡곤란 등)
- 강의실 책상 배치 시 병렬 배제하고 일렬유지(적정거리 확보)
: 강의실 구조와 상황에 따라 합리적 거리 확보

2) 학생

- 등교 전 건강상태(발열, 인후통, 기침, 호흡곤란 등)에 불편감이 있는 경우
지도교수에게 연락하여 상담 후 등교여부 결정
- 등교 시 필히 마스크 착용(마스크 미착용 시 등교가 거부될 수 있음)
- 건물 및 강의실 입실 시 손 소독제를 이용하여 손 씻기 철저
- 수업 중 가능한 1인 1책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

2. 의심 증상 시 행동 수칙

1) 교원 및 조교

- 수업 전 건강상태 확인 후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
 - 지정된 선별관리실로 이동지도 후 담당자(해당학과 조교)에게 연락(별첨 참조)
 - 담당자는 마스크와 지급된 장갑을 필히 착용하고 체온계를 지참하여 선별관리실에 있는 학생을 방문
 - 체온을 측정하고 의료지원센터 담당자(☎ 5787)에게 연락

2) 학생

- 등교 후 건강상태(발열, 인후통, 기침, 호흡곤란 등)에 불편감이 있는 경우
 -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담당교과목 교수, 그 외 지도교수에게 연락(가능한 면대면을 지양하고 전화통화 권장)
 - 지도교수 안내에 따라 선별관리실로 이동
- 수업 중 가능한 1인 1 책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
- 학교생활 중 마스크 착용 유지
- 밀폐된 강의실 수시로 창문을 여는 등 환기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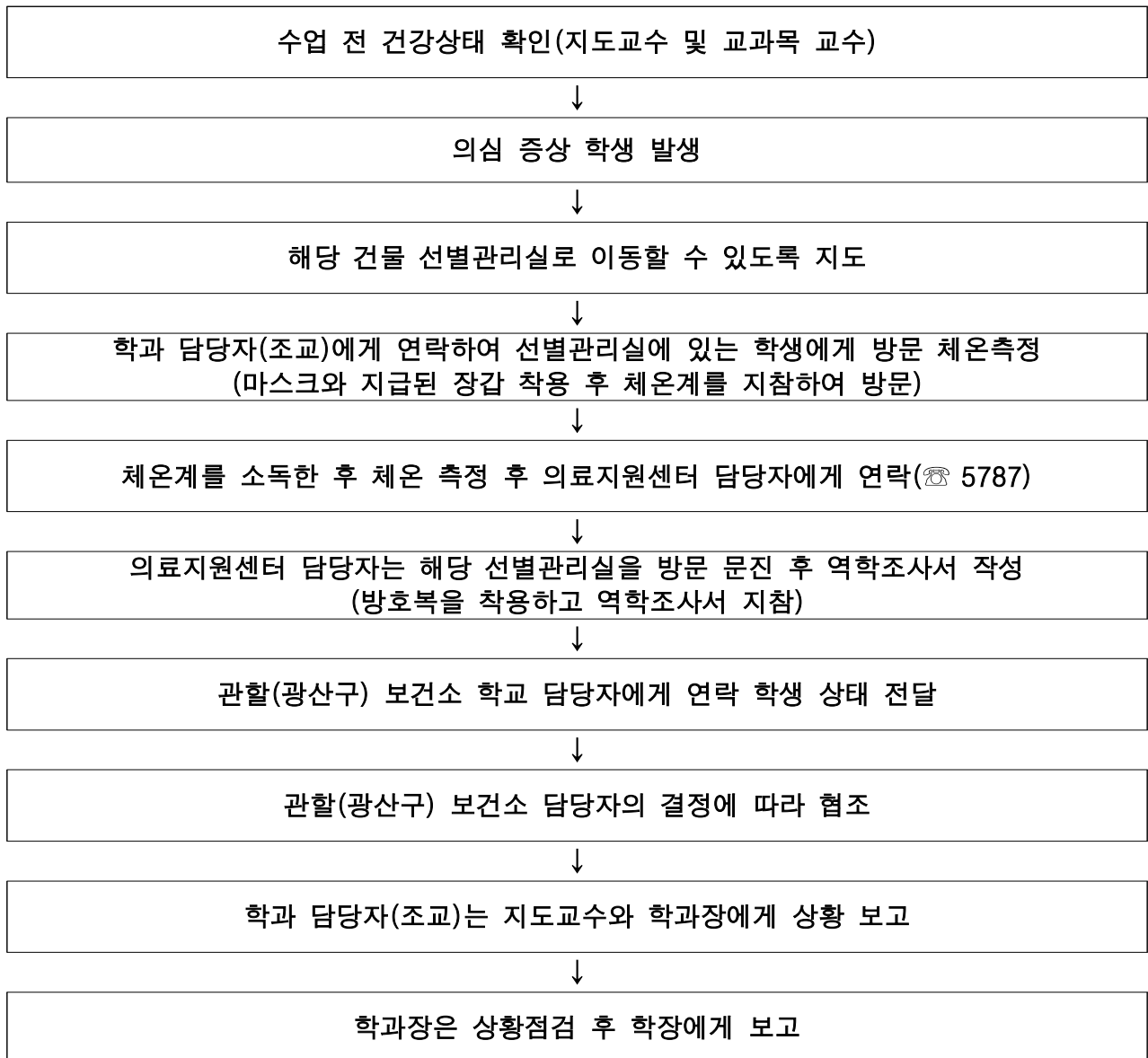
3) 의료지원센터 담당자

- 담당자는 의심자 발생 연락을 받은 후 상황 접수
- 역학조사서를 준비하고 방호복 착용 후 해당 선별관리실 방문
- 대상학생 건강상태 문진 후 역학조사서 작성
- 관할(광산구) 보건소 학교 담당자에게 연락
- 관할(광산구) 보건소 지시에 따름
- 선별관리실 방역(총무과에 연락) 및 소독

단과대학별 선별 관리실

연번	단과대학	건물명	호실	책임자	담당자	연락처	비고
1	인문사회대학	6호관	6101-2	이경희	임민지	5226	경찰학과 학회실
2	경영대학	4호관	4205-1	양길승	한송희	5221	여학생 휴게실, 조리학과, 식품영양학과 포함
3	보건과학대학	2호관	2106	조규정	이에란	5083	보건과학대학 학생회장실
		11호관	111021		조정현	3709	체육관
4	ICT융합대학	8호관	8804	정영기	강슬기	5078	엔지니어링 클리닉룸 세미나실
5	예술대학	1호관	1226-1	송진희	강윤진	3879	뷰티미용학과 학생회실
		10호관	10313		이동인	3819	미디어영상학과 학생회실
		17호관	17421		이준익	3849	패션디자인학과
6	교양융합대학	10호관	B113	송창수	이태영	5015	어학준비실
7	행정처	본부	총무과	박대귀			

3. 의심 증상 대상자 발생 시 행동 수칙



II 확진자 발생 시 협조

1. 보건당국의 역학 조사에 적극 협조

-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보건소의 검사 및 역학조사 전까지 **사업장 내의 격리 장소***에서 개인 보호구(마스크 등) 등을 착용하고 대기
 - * 시설 내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당국 안내에 따라 수행
- 보건소의 **확진환자 사례 조사 및 접촉자 범위 조사** 등에 적극 협조

2. 확진환자의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

- 역학조사 결과 **확진환자의 접촉자**로서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자*는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

* 관할 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자체 방역관이 자가격리 대상자 선정

【확진 환자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시 고려사항】

■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

⇒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접촉자는 14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

■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가 불명확한 경우

⇒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된 접촉자 이외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, **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*** 중 발열·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조치

* 확진환자와 동일 시·공간에 머물렀다고 예상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높은 사람 등

3. 일반 원칙

- 시설 관리자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시설의 **일시적 폐쇄**, **일반인 출입금지**, **시설 내 이동제한** 등 조치 시행
- 시설 폐쇄 등의 범위는 확진환자의 발생 규모,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, 반드시 시설 전체를 폐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
- 시설 폐쇄 등의 기간은 폐쇄의 목적, 방역에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지며, 충분한 환기 조치 후 시설의 재개 가능(통상 24시간 이내)

4. 시설 폐쇄 등의 범위

- 시설 폐쇄 등은 **확진환자 발생 규모(1명/복수)** 및 역학조사 결과 **이동 경로(명확/불명확)**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
- 시설 폐쇄 등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이 현장의 방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 가능

발생규모	이동 경로		시설 폐쇄 범위
1명 발생 (방문포함)	이동 경로 명확	⇒	- 해당 사무실 및 이동 경로 중심 폐쇄
	이동 경로 불명확		- 확진환자의 이용 예상구역(사무실, 화장실, 복도, 식당, 승강기 등)과 일반인의 이용·접촉이 잦은 구역 중심으로 폐쇄
복수 발생 (방문포함)	이동 경로 명확	⇒	- 같은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, 해당 층 전부 폐쇄 ※ 층간 이동통제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층 중점 방역
	이동 경로 불명확	⇒	- 다수의 층에서 복수 확진환자 발생 시,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폐쇄 검토 -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폐쇄

5. 시설 폐쇄 등의 기간

-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 소독을 위해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한 경우, 소독 후 **충분히 환기**를 한 후 시설 **사용 재개** 권고
- 시설 폐쇄 등의 기간은 **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**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(통상 24시간 이내)
- 다만, 소독 이외의 추가 방역 조치*를 위해 시설 폐쇄 등을 하는 경우 **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설의 사용 재개 기간 설정 가능**
 - * 오염 원인이 공조시설 등 환경적 요인에 있는 경우 해당 시설 교체 등

Ⅲ

확진·의사환자,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 시 행동수칙

시설 내 확진환자, 의사환자,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 시

즉시 해당 학생에게 마스크를 착용 후 별도의 격리 장소(단과대학별 선별관리실)로 이동
(보건당국에서 시설 내 조치 전까지 대기)



관할 보건소(광산구)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즉시 신고



시설 내 **상황 전파**(협력업체, 파견, 용역업체, 방문고객,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포함)



시설 내 **전체 근무자 개인위생 관리**(마스크 착용 등) 및
작업장 대기 또는 이동 금지 등 상호접촉 자제



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와 접촉하거나
발열(37.5℃이상), **호흡기 증상**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있는 근무자의 경우
보건당국에서 조치 전까지 별도의 격리 장소에서 대기

[보건당국의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]

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역학조사, 사업장 방역(소독*등),
코로나19 확진 검사 등을 실시 **협조·지원**

* 중앙방역대책본부 소독 안내 지침에 따라 소독 실시 및 사용 재개



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확진 검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**후속 조치***시행 **협조·지원**
*입원, 자가격리 또는 격리 해제 등